


**견정연 리포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자의 책임경감 방안

## 원도급자와 같이 차수별 계약 이뤄져야

장기계속공이란 국가계약법상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로 정의된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국가 관점에서는 분산투자자로 인한 경제손실, 시공사 관점에서는 공사의 연속성 확보 어려움, 과중한 보증의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보다 보증부문에 있어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 1999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의 개정으로 인해 건설공사 보증에 있어 도급인의 책임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의 물량을 이행할 경우 소멸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도급자는 이전 법률 개정 때 관련 법안에 하도급자에 대한 보증부담 완화가 명시되지 않아 지금까지 보증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자는 보증한도와 보증수수료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시 책임도 전체공사에 대해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자의 보증책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선행적으로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도 원도급자와 마찬가지로 차수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하도급자의 보증의무와 완료


**박 선 구**

&lt;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gt;

### 하도급 공사완료 시점 원도급자 기준과 같아야

### 보증한도 증가·수수료 경감 불합리한 계약 개선 가능

를 최소한 원도급자와 동일하게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공사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토록 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하여 동

일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하도급자의 불합리한 하자보수 책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도급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하자보수보증의 기산점이 되거나, 최소한 국가계약법에서 원도급자가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자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의 개선이 가능해지고, 하도급을 수행하는 업체에게는 보증한도 증가 및 보증수수료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증사고 발생시 책임범위 역시 명확하게 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고 그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생발전을 이루는 방안이기도 하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보고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의 보증 책임을 경감시켜 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